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개정 권고

##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중 ‘2.시험·검사요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학력·경력자에게는 품질관리업무 수행을, 기술자격자에게는 건설공사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이라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취득에 있어서 학·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검토배경

2004.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품질관리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학·경력자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을, 일부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업무 수행을 품질관리원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특정 기술자격자의 경우에 ‘공무’나 ‘공사’ 수행자가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품질관리원으로 선임되므로, 이는 품질관리업무종사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 2. 검토대상 및 검토기준

#### 가. 검토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1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 나. 검토기준

이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3)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3. 판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11 품질관리원

의 자격인정 범위에서 학력·경력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한 것은 건설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구비한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그러한 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자격은 없으나 그 분야에서 일정한 학·경력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조치이다.

그런데, 법령은 품질관리원의 자격요건으로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에 대하여 다른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학·경력자는 품질관리업무 수행만을, 토목기사 등은 자격취득 이후 품질관리업무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품질관리업무외에 다른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했음에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품질관리원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격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토목 또는 건축기사,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이다(이하 ‘토목기사 등’ 이라 한다).

토목기사 등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시험에는 품질관리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4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이에, 토목기사 등은 품질관리 과목이 포함된 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인정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관련 품질관리업무종사자는 토목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품질관리업무는 토목, 건축의 유사직무로 인정되어, 품질관리업무 종사자는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1의3).

따라서, 법령이 토목기사 등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외에 다른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도 품질관리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이 같은 품질관리 관련 기본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인정과 함께, 토목기사

등이 건설공사업무기간 동안 공무나 공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중에서 한 가지 분야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경험하므로 총괄업무의 일부로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했다 라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품질관리원의 업무는 다른 건설공사업무 분야와 다른 고유하고 전문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품질관리원과 유사하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자격인정범위 규정을 두어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의 경우와 비교하면 유추할 수 있다.

즉,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와 감리원의 자격(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에서는 자격요건으로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에게 똑같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감리원의 자격에서는 학·경력자에게 ‘감리’ 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품질관리원에 대해서는 학·경력자에게 ‘품질관리업무’ 수행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건설공사업무 분야의 수행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고유의 전문적인 업무요소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질관리업무에는 콘크리트의 배합비율의 확인, 철근의 인장강도 확인 등 일반적인 업무와 용접, 비파괴검사, 화공 및 방직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다. 이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은 별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이 품질관리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품질관리원이 별도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품질관리업무가 건설공사에서 고유한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품질관리원의 체계를 보면 초급에서 특급까지 등급을 두고 있다. 이러한 등급체계는 품질관리업무 수행자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평가하여 등급에 비례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경력자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급이 높을수록 업무의 숙련도가 높은 자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토목기사 등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등급체계가 품질관리업무의 숙련도와 비례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토목기사 등에 대해서는 그들의 품질관리원 등급으로는 품질관리업무 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목기사 등이 그 자격취득후 건설공사에서 다른 분야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품질관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거나, 전체공사의 총괄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총괄업무중 하나로 품질관리업무도 수행한 경우에도, 품질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품질관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품질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경력자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품질관리원이라는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기술자격자에게는 건설공사 업무 수행을, 학·경력자에게는 품질관리업무 수행이라는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학·경력자의 품질관리원 자격취득에 있어서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품질관리라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자격자나 학·경력자 모두 품질관리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업무 수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토목기사 등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모두에게 일정기간 건설공사업무 수행중 일정기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각각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4. 7. 26.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